

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770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5년 9월 2일
제안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안 제4조의2(화재 예방 점검)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화재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,
-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, 「주차장법」 등 타 법령에 따라 허가·설치되는 시설로, 소방이 해당 구역에 대해 직접 구조적 개선을 요구하거나 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는 상황임.
- 이러한 점에서 해당 구역을 소방점검 대상에 포함할 경우 자칫 법적 책임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, 직접적인 점검보다는 관계인에게 권고하는 방식이 법리적으로 적절하고 시민 안전 확보라는 소방정책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됨.
- 이에 안 제4조의2를 신설하는 대신에 안 제4조의2 제1항 중 제2호와 제3호의 내용을 현행 제8조(관계인에 대한 권고)의 권고 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장의 점검 권한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.(안 제4조의2 삭제)
- 나. 관계인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가연성·인화성 물질 및 발전기실·전기실 등과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권고함.(안 제8조제5호 신설)
- 다. 관계인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피난시설(직통계단, 비상구 등)과 직접 면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고함.(안 제8조제6호 신설)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2(화재 예방 점검)를 삭제한다.

안 제8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은 화재 확산 위험을 고려하여 가연성·인화성 물질 및 발전기실·전기실 등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 위치에 설치

6.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은 피난시설(직통계단, 비상구 등)과 직접 면하지 않도록 설치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4조의2(화재 예방 점검) ① 시 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 역의 화재 예방 및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점검할 수 있다.</p> <p>1.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 치 위치의 적정성</p> <p>2.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 차량 및 가연성 물질 간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공간 확보 여부</p> <p>3.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피난시설(직통계단, 비상구 등) 사이의 소방활동 및 대 피를 위한 공간 확보 여부</p> <p>4. 그 밖에 시장이 화재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화 재 예방을 위한 개선 사항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안 내할 수 있다.</p>	<p><삭 제></p>
<p>제8조(관계인에 대한 권고) 시 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 응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(생략)</p>	<p>제8조(관계인에 대한 권고) 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8조(관계인에 대한 권고) 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개정안과 같음)</p>

<p>5. (생략)</p>	<p><신 설></p> <p>5.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은 화재 확산 위험을 고려하여 가연성·인화성 물질 및 발전기실·전기실 등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 위치에 설치</p> <p><신 설></p> <p>6.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은 피난시설(직통계단, 비상구 등)과 직접 면하지 않도록 설치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	<p>7. (개정안 제5호와 같음)</p>
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은 화재 확산 위험을 고려하여 가연성·인화성 물질 및 발전기실·전기실 등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 위치에 설치

6.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은 피난시설(직통계단, 비상구 등)과 직접 면하지 않도록 설치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관계인에 대한 권고)----- ----- -----.	제8조(관계인에 대한 권고)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.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은 화재 확산 위험을 고려하여 가연성·인화성 물질 및 발전기실·전기실 등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 위치에 설치
<u><신 설></u>	6.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은 피난시설(직통계단, 비상구 등)과 직접 면하지 않도록 설치
5. (생략)	7. (현행 제5호와 같음)